



코로나19와 인권: 격리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코로나19와 인권



코로나19와 인권

- 건강권
- 격리와 적법절차
- 사생활의 자유, 정보인권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등
- 아동과 교육권
- 돌봄과 여성인권
- 비정규직, 불안전고용, 취약노동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기타 강제조치 그리고...

인권에 기초한 접근

38. 인권에 기초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고 기능상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개발과정의 개념적 틀이다. 이 접근은 인간개발의 문제의 중심과 위기 상황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의 분석함과 더불어 인간개발을 방해하는 차별적 관행과 불공정한 권력의 배분을 바로잡고자 한다.

39. **인권에 기초한 접근은 권리자의 권리 주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이루기 위해 권리자와 그 자격, 그리고 상응하는 의무자와 그 의무를 확인한다.** 이 접근은 권리자의 역량 강화와 의무자의 대응 그 자체가 중요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이 접근은 모든 인간을 하나의 사람이자 권리자로 파악하고 위기상황과 인도적 대응에 있어 주로 국가 및 다른 주체들에 의해 인권의 보호와 달성의 보장을 예정한다.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재난이나 분쟁 후 상황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있어서 모범사례와 제약조건에 대해 연구기반 최종보고서 2015)

인도적 원칙

제6조 인도적 원칙

재난에 대한 대응은 인류애, 중립성, 공정성의 원칙에 입각하고, 특별히 취약한 이들을 고려한 차별금지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 인류애의 원칙은 ”인간의 고통은 그것이 발견되는 곳마다 다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중립성의 … 원칙은 재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재난 대응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 기타 다른 관련 주체들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도록 보장한다.

… 공정성의 원칙은 재난 대응이 특별히 취약한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재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들의 필요를 충분히 존중하고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평등과 사람들 간에 부정적 구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반영한다.

(유엔국제법위원회, 재난 상황에서의 사람의 보호, 2016)

감염병 영화, 그리고 현실

**“Nothing spreads like fear.”
(Contagion)**

V

**“아무 것도 만지지 마라”
(컨테이션)**

메르스의 기억: 통계

2015년 10월 30일 오전 9시 현재 확진 인원 186명 중 사망자 37명(19.9%), 치료 중인 환자 4명(2.2%), 퇴원자 145명(78.0%)이고, 격리경험자는 16,752명에 이른다.

격리자가 가장 많았던 2015년 6월 18일 오전 6시 현재 격리자는 모두 6,729명이고, 그 중 자가 격리자가 5,857명, 병원 격리자가 872명이다.

메르스의 기억: 문제점

- 메르스는 ‘감염병’인가?: 법률유보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신종감염병증후군’,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격리기준의 불명확성: ‘인체 침입 의심’, ‘접촉’, ‘감염 우려’, ‘전파 우려’, ‘감염 의심’?
- 격리의 절차: 격리일, 기간, 시설, 근거규정, 처벌규정 통지; 인신구제청구권, 격리 중 권리, 처우 통지 없음 등 기타 적법절차 전무
- 격리자의 격리 중 권리, 처우: 규정 전무

메르스의 기억: 반성

“메르스 환자와 그 가족들은 초기부터 피해자로 여겨지기보다는 경계해야 할 보균자로 인식됐다.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격리됐고, 사망한 가족의 장례도 지키지 못했다. 지역사회 복귀한 후에는 경계해야 할 보균자로 인식됐다. 심지어 격리조치를 위반한 일부 의심환자들은 시민적 덕성이 부족한 이들로 비난을 받았다.

감염의 공포와 격리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의심환자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고 공중보건이라는 이름 하에 이들을 격리하는데 바빴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환자, 가족, 일반시민들에 대한 윤리적인 대응방식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대한의학회장)
(2015. 8. 31.)

코로나19 유엔지침: 격리

긴급보건권에 관한 모범 주법 (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 MSEHPA)과 관련 주법, 판례 등이 제시하는 원칙 (미국)

격리는 헌법상 개인의 평등한 보호와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격리는 특정 사회 집단이나 특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적법절차의 보장상 격리는 **적절한 통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두진술권, 이의제기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격리가 가지는 중대한 권리 제한 및 잠재적 낙인효과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절차적 보호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격리의 이유, 방법, 기간, 장소,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서면 설명이 있어야 하고, 격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절차와 그 절차의 최소침해성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격리의 적법절차, 격리 중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을 위시한 국제인권법에서는 공중보건 또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 권리의 제한이 **적법하고, 필요하며, 적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유증상자의 강제 격리는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도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격리는 **적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기한이 한정적이고,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며, 검토 가능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에서의 인권 문제 (HRW, 2020. 3. 19.)

격리의 적법절차, 격리 중 권리

긴급보건권에 관한 모범 주법 (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 MSEHPA)과 관련 주법, 판례 등이 제시하는 원칙 (미국)

격리는 헌법상 개인의 평등한 보호와 적법절차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격리는 특정 사회 집단이나 특정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적법절차의 보장상 격리는 **적절한 통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두진술권, 이의제기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격리가 가지는 중대한 권리 제한 및 잠재적 낙인효과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절차적 보호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격리의 이유, 방법, 기간, 장소, 이의제기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서면 설명이 있어야 하고, 격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절차와 그 절차의 최소침해성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격리의 적법절차, 격리 중 권리

긴급보건권에 관한 모범 주법(Model State Emergency Health Powers Act, MSEHPA)과 관련 주법, 판례 등이 제시하는 원칙 (미국)

격리자에게는 적절한 의식주와 의료조치를 포함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격리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격리시설은 가능한 편안하고 제약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격리자에게는 **격리로 인한 수익 감소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고나 임금감액 가능성, 직장에서의 낙인효과 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격리

[2020. 5. 18. 00시 기준]

- 확진 11,065 중
완치(격리해제) 9,904 / 치료 중 (격리 중) 898 / 사망 263
- 누적검사 753,211

[2020. 4. .14. 18시 기준]

- 자가격리자 59,918
- 누적 시설격리, 자가격리 통계를 전혀 찾을 수 없음. 최소 수만 명의 시설격리, 수십만 명의 자가격리 추정 가능함.
- 법에 근거한 강제격리인지,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자발적 보호인지조차도 제대로 구별되지 않은 채 '격리'로 지칭되는 경우들이 있음. 지자체들이 얘기하는 '예방적' 격리도 그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 강제성을 떨 수는 있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음.

코로나19 격리 대상

- 격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 개별 감염병에 관한 격리는 별도의 지침에 의함.

- 감염병예방법상 격리대상자

①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제41조 제3항)

②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제46조)

③ '**조사거부자**'(제42조 제7항)

④ '감염병의심자(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상 특정지역 체류 혹은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제42조 제2항,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제2조 제15의2호) 등

- 모두 형사처벌의 근거규정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개별 격리조치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음.

(밀접접촉 v.일상접촉)

코로나19 격리 절차

- 격리의 절차와 관련하여 감염병예방법령은 자가치료에 대해서는 자기치료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린다고만 규정하고 있고(제41조 제4항, 시행령 제23조 별표 2), 입원치료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통해 입원일, 입원기간, 입원치료 장소 및주소, 근거 법률조항, 거부시 형사처벌 등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43조,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제22호서식).
- 또한 감염병예방법은 관련 공무원의 증표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42조 제5항)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의 인신보호법에 근거한 인신구제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제42조 제10항).
- 의견제출권 및 의견제출권의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재 2018. 5. 31. 선고 2014헌마 346 결정), 이의신청권 등의 문제

코로나19 격리 문제의 예: ‘안심밴드’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조치됩니다.(시설이용 비용: 자부담)”

- 법적 근거는?
- 당사자의 동의?
- 거부 시 시설격리?
- 거부 시 비용부담?
- 모든 개인에게 전자칩을 심어라?

코로나19 격리와 인권

- 격리 혹은 이와 유사한 조치의 명령 혹은 권고 시 그 법적 근거와 강제성 유무 등을 충분히 제시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실질적 동의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함.
- 격리의 요건은 반드시 명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함.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두진술권, 이의제기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격리의 내용과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함.
- 격리자가 그 구금으로 인해 받을 생계, 가정, 학교, 직장, 사회생활상의 모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각각에 대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감사합니다

